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인터넷(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신청(24시간 신청가능)



대표전화 **1600-1004**

임대상담실 **041) 956-2603**

LH 홈페이지 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2021.06
www.lh.or.kr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생활이 편리한 **장항의 중심,**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



성공을 위한! 주거짐검다리

장항성주 **영구임대**

장항의 중심에서 군산까지 한걸음에 누리는 자리!
생활도 교통도 편리한 장항성주에서 군산까지 한걸음에 누리며
성공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PREMIUM LANDSCAPE

단지조감도 / 조경배치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내 집 같은 새집에 반하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영구임대!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항성주 영구임대는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 주거 가능으로 집 걱정 없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공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1~2인 가구 위주의 맞춤형 설계로 경제성을 높임은 물론 합리적인 공간 배치로 편의성까지 고려한 내 집 같은 새집



풍요로운 삶을 잇는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무인택배보관함 등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벽걸이 에어컨 빌트인 제공



장항성주 행복주택 & 영구임대 [총 100세대]

장항성주 영구임대 10세대	24A	장항성주 행복주택 90세대 [별도공급]	16A	26A	36A	36B
	10세대		28세대	32세대	24세대	6세대

※ 상기 단지조감도 및 조경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NIT PLAN
단위세대

24A

10세대

주택 면적

전용면적	24.9600㎡
주거공용면적	14.9344㎡
기타공용면적	5.3659㎡
계약면적	45.2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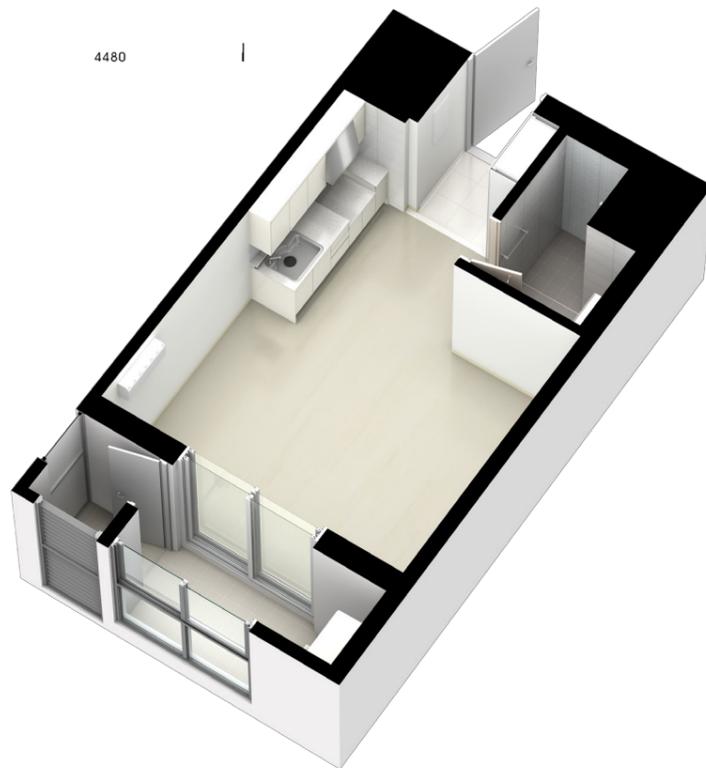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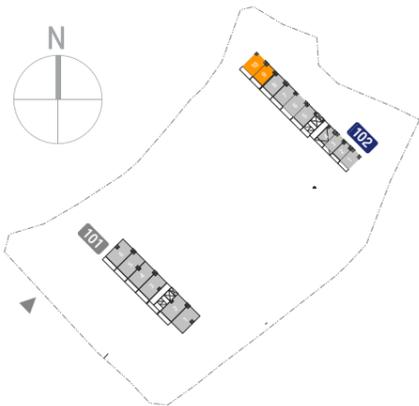
실별 면적

거실/침실	13.33㎡
주방/식당	6.83㎡
욕실	3.12㎡
현관	1.68㎡
합계	24.96㎡

발코니 면적

발코니계	6.72㎡
------	-------

Key map



※ 본 팸플릿에 표현된 평면도, 세대조감도 등의 마감재(가구류, 문짝, 타일, 도배지, 바닥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 구현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정자재로써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세대조감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기준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등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X0.3025=평)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생도기 시공시 모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종류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24TYPE에만 설치 됩니다.
 ※ 입면분할청(하부고정, 상부개폐형)설치로 이차시 사다리차 이용 등에 주의 바랍니다.

동·호배치도

장항성주 행복주택 & 영구임대 [총 100세대]	장항성주 영구임대 10세대	24A 10세대	장항성주 행복주택 90세대 [별도공급]	16A 28세대	26A 32세대	36A 24세대	36B 6세대
-------------------------------	-------------------	-------------	--------------------------	-------------	-------------	-------------	------------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36A
36B [주거약자]
101동 [30세대]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201	202	203	204	205	206	필로티	필로티	209	210
101	102	103	104	105	106		공용세탁실	109	110

24A	26A	16A
102동 [70세대]		



장항성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6.24]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7.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6.2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6.24)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서천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지는 영구임대(10호)와 행복주택(90호)의 혼합단지로서 동일자로 공고하는 장항성주 행복주택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41-17 일원 영구임대주택 1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m)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합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24	10	24.96	14.9344	5.3658	45.2602	10	3	7	102	철근 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	'22.10

-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혼합단지입니다. 행복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하며, 행복주택과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서천군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서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장항성주 영구임대주택에는 에어컨(벽부형) 빌트인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24	2,188,000	437,000	1,751,000	43,530	15,839,000	3,167,000	12,672,000	94,870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 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위안부 피해자(다목)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6.24) 현재 주민등록 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구성원을 포함
-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공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 120%, 2인 11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1인가구, 2인가구 각각 20%p, 10%p 상향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th> <th>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th> <th>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th> </tr> </thead> <tbody> <tr> <td>1인가구</td> <td>(2,094,142)원 이하</td> <td>(2,692,468)원 이하</td> <td>(3,589,957)원 이하</td> </tr> <tr> <td>2인가구</td> <td>(2,737,521)원 이하</td> <td>(3,650,028)원 이하</td> <td>(5,018,789)원 이하</td> </tr> <tr> <td>3인가구</td> <td>(3,120,260)원 이하</td> <td>(4,368,364)원 이하</td> <td>(6,240,520)원 이하</td> </tr> <tr> <td>4인가구</td> <td>(3,547,103)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r> <tr> <td>5인가구</td> <td>(3,547,103)원 이하</td> <td>(4,965,944)원 이하</td> <td>(7,094,205)원 이하</td> </tr> <tr> <td>6인가구</td> <td>(3,696,824)원 이하</td> <td>(5,175,553)원 이하</td> <td>(7,393,647)원 이하</td> </tr> <tr> <td>7인가구</td> <td>(3,889,012)원 이하</td> <td>(5,444,616)원 이하</td> <td>(7,778,023)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p>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094,142)원 이하	(2,692,468)원 이하	(3,589,957)원 이하	2인가구	(2,737,521)원 이하	(3,650,028)원 이하	(5,018,789)원 이하	3인가구	(3,120,260)원 이하	(4,368,364)원 이하	(6,240,520)원 이하	4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5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6인가구	(3,696,82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7,393,647)원 이하	7인가구	(3,889,012)원 이하	(5,444,616)원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094,142)원 이하	(2,692,468)원 이하	(3,589,957)원 이하																													
2인가구	(2,737,521)원 이하	(3,650,028)원 이하	(5,018,789)원 이하																													
3인가구	(3,120,260)원 이하	(4,368,364)원 이하	(6,240,520)원 이하																													
4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5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6인가구	(3,696,82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7,393,647)원 이하																													
7인가구	(3,889,012)원 이하	(5,444,616)원 이하	(7,778,023)원 이하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1,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기준에 포함되나,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구분	산정방법
부동산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우선공급 배정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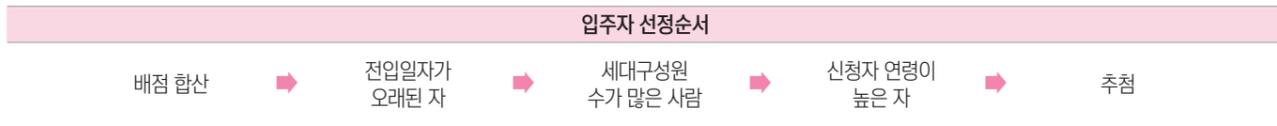
단지명	공급 형태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장항성주	24	3	국가유공자 등	귀한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1	1	1	별도배정 호수 없음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귀한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나목	- 귀한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1 '국가유공자등, 귀한국군포로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에 적용



2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천군 거주자로서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임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청약신청 주택명 : 장항성주 영구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1-000490]</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회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인터넷이 가능 할 경우</td> <td>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td> </tr> <tr> <td>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td> <td>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 할 경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 할 경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3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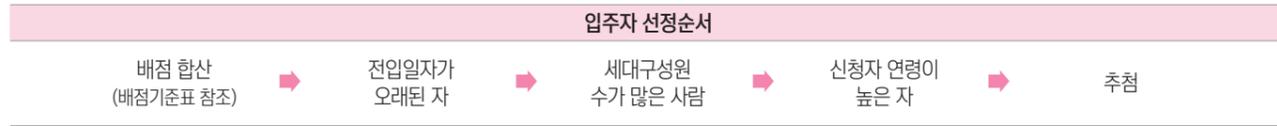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1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군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순위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선공급 시 일반공급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방법

* 일반공급, 우선공급 중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적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 배점기준표

1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신혼부부 제외)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서천군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천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서천군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주택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점(최대 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4	▶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세대원 포함)	

2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점	3명 이상
	2점	2명
	1점	1명
서천군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3점	24회 이상
	2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1점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내
	2점	3년 초과 5년 이내
	1점	5년 초과 7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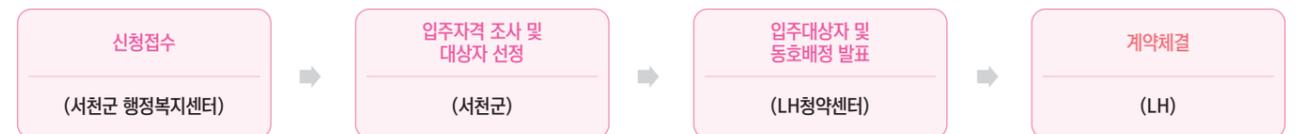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일시에 모집공고한 동일단지의 행복주택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우선공급 일반공급	2021.07.05(월)~ 07.12(월) (09:00~17:00)	2021.10.05(화) 17:00이후	2021.10.18(월)~10.20(수) 10:00 ~ 16:00
장소	충남 서천군 소재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LH청약센터 (apply.lh.or.kr)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자에 한해 추후별도안내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분은 별도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무작위로 배정되며, LH청약센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6.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1.06.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구비서류	비고	부수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별지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별지2호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3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지4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별지5호 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구비서류	비고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 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행정복지센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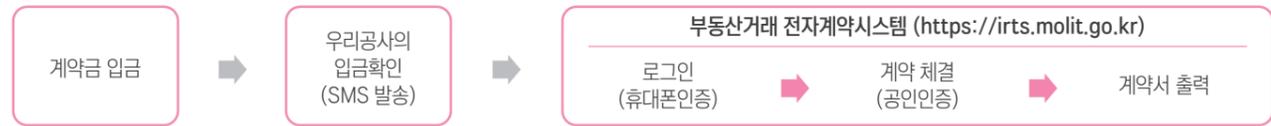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1.10.05(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경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N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혹은 당첨자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1.10.18.(월) 10:00 ~ 2021.10.20.(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

○ 현장계약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주의사항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하는 경우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사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다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해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공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차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2인 중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청약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 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남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금융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가능) • 세대모형, 펌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펌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발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발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주회차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및 단지여건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영구임대 10세대, 행복주택 9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 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차차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배차상 펌프실, 가스 정압기,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악취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급수, 오배수 배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별도시가스 차단밸브 박스는 녹지 부위 등에 설치되어 철판뚜껑으로 마감, 노출됩니다. • 발코니에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 후면 조정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의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저수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펌프실, 저수조 설치위치 : 1개소(101동 인근지하)] • 주택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 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와 급수·급탕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할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 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과 배수구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천정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입니다. • 주차장은 지상에만 76대로 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자동차 출입구는 1개소이며 출입구에는 경비실 및 차량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 및 석축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차 출입구는 3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자의 추가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 음식물쓰레기용기 등)가 동주변에 위치하여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변경 수용은 불가합니다. • 각 동 주변으로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위치는 조감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비실의 위치 및 면적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남측 보행차출입구 보도구간에 있는 수목은 보상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단지 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지하)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기실은 발코니에 별도로 구획되어 설치되었으나, 실외기 가동에 따른 소음 및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소화장치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와 급수 급탕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할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과 배수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천정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입니다. •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로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홍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온수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분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16A : 손빨래용 수전, 그 외 타입은 세탁기용 수전)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 및 장애인편의시설은 신청 시기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102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상부에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세대경계 벽은 경량칸막이로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벽으로 물건적재 등은 할 수 없으며,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에 에어컨 드레인배관이 설치되어 소음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p>■ 일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 내 · 외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단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 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별도 안내합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명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장항성주	한국도지주택공사	건축 기계 토목	대림건설(주) 승원종합건설(주)	-	(주)길건축사사무소 (주)유타엔지니어링
		전기	주식회사대우이엔지		주식회사나로이엔씨
		통신	주식회사 렉스		주식회사나로이엔씨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 제외)
6.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9.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 ·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아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노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아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징 자료
	임차 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징 자료
	선박, 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3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리플렛 배부처	· 서천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24.

